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각급 학교장 포함)이 발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과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①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면제) ①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의 발급 또는 정보공개와 동시에 징수하여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